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과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시가 권장하는 관광산업발전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사업에 대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생업소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신청과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7조)

라. 위생사업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2조) 마. 위원회참석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2) 관광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3)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제60조(조합의 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및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7조(위생교육), 제19조(국고보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 참고자료 :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 T/F팀, 청렴정책팀과 합의

라. 기 타 : 해당없음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위생업소를 말한다. 다만,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3.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우수업소를 말한다.
4. “구미맛집”이란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우수하며, 최근 2년 이내 식중독 발생 민원불편신고 및 행정처분이 없는 음식점으로서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 맛과 서비스, 위생 등을 평가 심의하여 선정된 업소를 말한다.
5.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우수공중위생업소”란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 관리상태 등이 우수이상의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실천업소
2. 모범음식점과 구미맛집으로 선정된 우수업소
3. 위생업소 중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4. 그 밖에 시의 지역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또는 교부할 수 있다.

1.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
2. 지역대표 음식 발굴 보전, 개선, 개발, 보급, 육성사업 및 위생업소 기능 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 사업
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 또는 사업자의 주소와 거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위생업무 담당국장, 위생업무 담당과장
2. 구미시의회 의원
3.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4.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소관업무 주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사업 신청서			
명칭(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사업기간			
사업계획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광기본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60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3. 조합원을 위한 경영지도
4. 조합원과 그 종업원을 위한 교육훈련
5. 조합원과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하는 조사·연구 사업
7.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쬌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뚜껑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營業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營業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시·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 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2. 우수업소 : 황색등급
3.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과 실·과		위 생 과
입 안 자	과 장	박 수 연
	담 당	변 동 석
	담 당 자	김 미 향 (480-5494)